

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장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10.

제 출 자 : 동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‘직전연도 부과분’은 익년 2월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(안 제2조제2항제1호)
- 나.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서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(징수금의 30%)를 교부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 세목에 대한 징수촉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조정함 (안 제2조제2항제2호)
- 다. 조문 정비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등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(2015. 8. 20 ~ 9. 9)결과 : 별도 의견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“해당 없음”
 - (3) 성별영향 평가 : “해당 없음”
 - (4) 부패영향 평가 : “해당 없음”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‘체납액’이라 한다)”을 “지난년도 체납액(직전년도 부과분은 익년 2월까지 제외하며, 이하 “체납액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 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부과액”을 “징수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급대상) ② 법 제138조제1항 제4호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2조의 2에 따른 “지속적인 납부독려,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<u>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‘체납액’이라 한다)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</u></p> <p>2. 「지방세법」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제2조(지급대상)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지난년도 체납액(직전년도 부과분은 익년 2월까지 제외하며, 이하 ‘체납액’이라 한다)</u>-----</p> <p>2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지급기준) 1~2 (생략)</p> <p>3.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<u>부과액</u>의 100분의 5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<u>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</u>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</p>	<p>제3조(지급기준) 1~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징수액</u>-----</p> <p>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<u>“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”〈삭제〉</u>----- ----- -----</p>